공화국형사소송법에서 증인의 자격에 대한 문제

신 광 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범죄자와 범죄사실을 똑똑히 밝혀내자면 과학적인 증거자료들을 가지고 모든 사실을 립증하여야 합니다.》(《김정일선집》 중보판 제10권 123폐지)

모든 형사사건을 법적요구와 국가적리익에 맞게 처리하자면 과학적인 증거자료들을 충분히 수집하고 그에 기초하여 범죄사건을 의문의 여지없이 밝히고 처리하여야 한다. 여기서 중요한것은 증인의 선정을 최대한 증거를 수집할수 있도록 법적으로 규정하는것이다.

형사소송에서 과학적이며 객관적인 증거를 최대한 수집하여 그것으로 사건을 의문의 여지없이 정확히 취급처리하는데서 증인의 자격문제가 중요한 문제로 제기된다. 그것은 형사사건취급처리에 참가하는 증인의 자격문제를 법적으로 어떻게 규제하고 적용하는가 하는데 따라 형사사건취급처리에서 과학적증명의 원칙을 관철하는가 못하는가 하는 문제가 좌우되기때문이다.

증인의 자격제도는 증명수단으로서의 증인의 말의 과학성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조 건의 하나이다.

증인의 말은 형사소송에서 범죄자와 범죄사실을 립증하는 증명수단의 하나이다. 형사소송에서는 범죄자와 범죄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증인을 선정하고 그의 진술을 증명수단으로 리용한다.

증인의 자격에 대한 문제는 어떤 사람을 증인으로서 허용하겠는가와 관련된 문제이다. 증인은 사건해결에 도움을 받기 위하여 선정한다. 증인은 자기가 보거나 듣거나 느낀 사 실을 그대로 사건을 취급처리하는 기관에 전달함으로써 사건해결에 도움을 주게 된다.

증인을 선정하여 사건해결에 도움을 받기 위하여서는 증인자체를 객관적이면서도 진 실성이 보장된 진술을 할수 있는 사람들로 선정하여야 한다.

사람들속에는 정신상태, 육체적조건 등 여러가지 요인으로 하여 객관적이면서도 진실 성이 보장된 진술을 할수 없는 사람들도 있다. 이러한 사람들은 증인으로 선정되여도 형사 사건을 취급처리하는 기관에 아무런 도움도 줄수 없으며 오히려 사건취급처리에 복잡성만 가져다주게 된다.

만일 형사소송법에 증인의 자격을 규제하면서 증인으로 될수 없는 사람의 범위를 지나치게 넓게 설정한다면 응당 증인으로 나설수 있는 사람들까지 증인의 범위에서 제외함으로써 수집할수 있는 증거도 수집하지 못하여 사건을 정확히 취급처리하지 못하거나 사건취급처리에서 과학성을 보장할수 없게 된다. 반대로 증인으로 될수 있는 사람의 범위를 아무런 고려없이 지나치게 넓게 설정한다면 객관적이며 진실한 진술을 할수 없는 사람들까지도 증인으로 될수 있도록 허용하게 되여 증인진술의 과학성을 보장할수 없게 되며 결국에는 사건을 옳바로 처리할수 없게 된다.

현재 일부 나라들에서는 증인의 자격을 설정하는데서 나이, 직업, 피고와의 관계 등 여러가지 징표들을 증인자격규정의 기준으로 내세우고있다.

이러한 증인자격제도는 증인으로 나설수 있는 사람들의 범위가 제한되므로 과학적증 거수집에서 일련의 부족점들을 가지고있다. 그러므로 증인의 자격문제를 설정하는데서 과 학적증명의 원칙을 철저히 관철하는 원칙에서 선정하는 문제가 필수적으로 제기되게 된다. 공화국형사소송법에서는 무엇보다먼저 증인으로 될수 있는 일반적조건을 규제하는 방식으로 증인의 자격을 규정하였다.

증인으로는 해당 범죄사건에 대하여 보거나 듣고 느낀것이 있는 사람이 될수 있다.

증인으로 될수 있는 기본표징은 해당 사건에 대하여 알고있어야 한다는것이다. 그것은 증인으로 선정하는 목적이 증인을 통하여 해당 사건해결에서 도움을 받자는데 있기때문이다. 그러므로 해당 사건에 대하여 알지 못하는 사람은 증인으로 될수가 없으며 또 선정할 필요도 없다.

증인으로 해당 사건에 대하여 보고 듣고 느낀것이 있는자가 될수 있다고 할 때 여기에는 여러가지 의미가 담겨져있다.

우선 증인으로 되자면 감각, 지각, 기억, 표현할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는 의미가 담겨져있다.

해당 사건에 대하여 보고 듣고 느낀것이 있다는것은 해당 사건과 관련된 사실을 감수하고 지각하며 기억하고 표현할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능력이 없다면 사건해결에 도움을 줄수가 없다.

실례로 사건과 관련한 그 어떤 사실을 목격하였다 하더라도 정신병환자에게서는 사건해결에 도움을 받을수 있는 객관적이며 진실성이 보장된 진술을 기대할수 없다. 그리고 청각장애자는 들을수 없으므로 그에게서는 들었다는것과 관련된 진술을 기대할수 없으며 시각장애자는 볼수 없으므로 그에게서는 보았다는것과 관련된 진술을 기대할수 없다.

이로부터 법에서는 정신병과 그밖의 신체상결함으로 형사사건에 대하여 듣거나 본 사실을 옳게 리해할수 없거나 정확히 표현할수 없는자는 증인으로 될수 없다고 규제하였다.

증인의 이러한 자격에 대하여 일부 나라들의 법에서도 증인의 감각, 지각, 기억, 표현 능력에 따라 증인을 선정하고있다.

공화국형사소송법에서는 감각, 지각, 기억, 표현능력이 있는 경우에만 증인으로 나설수 있도록 규정하고있다. 만일 범죄사건을 목격한 증인이라고 하여도 그의 감각, 지각, 기억, 표현능력에서 결함이 있는 경우 그들의 증언에 의거하게 되면 사건을 잘못 취급처리할수 있다.

그러므로 공화국형사소송법에서는 사건취급처리에서 과학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증인의 정신상태는 물론 그의 감각, 지각, 기억, 표현능력을 따져보고 정상인 경우에만 증인으로 선정하고있다.

공화국형사소송법에서는 미성인도 증인으로 나설수 있지만 그들이 증인으로 나서는 경우 자기가 보고 듣고 느낀것을 그대로 표현할수 있는 감각, 지각, 표현능력만 있으면 증인으로 될수 있으며 그의 증언도 증거로 쓸수 있도록 규정하고있다.

또한 알고있는 사실의 정도, 그것을 알게 된 경로에는 관계없이 해당 사건해결과 관련 한 사실을 알고있으면 증인으로 될수 있다는 의미가 담겨져있다.

증인을 선정하는것은 필요한 증거를 수집고착함으로써 사건해결에 도움을 받자는데 있다. 때문에 증인이 사건사실에 대하여 어느 정도 알고있는가 하는것에는 관계없이 해당 사건을 밝히고 확정하는데 도움을 줄수 있는 사실을 알고있으면 증인으로 선정할수 있도록 형사소송법에 규제하고있다.

공화국형사소송법에서는 해당 범죄사건에 대하여 듣거나 보고 느낀것이 있는 사람은 다 증인으로 나서도록 규정하고있다. 그러나 그가 그 사건에 대하여 어느 정도 알고있어야 하 며 그것을 직접 보거나 듣고 느꼈는가 아니면 다른 사람을 통하여 알게 되였는가 하는 알게 된 경로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는 특별히 규정하지 않고있다. 이것은 결국 범죄사건에 대하여 알고있는 정도와 그것을 알게 된 경로가 증인의 자격규정에서 문제시되지 않고있다는 것을 말하여준다.

공화국형사소송에서 증인으로 되는데서는 첫째로, 그가 사건에 대하여 얼마나 알고있는가 하는것이 문제로 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사건의 시작으로부터 마감에 이르기까지의 전과정을 목격할수도 있지만 그렇지 못하고 사건의 진행중의 일부 행위, 현상들만을 목격할수도 있다.

사건의 일부만을 목격한 사람의 증언은 사건전체에 관한것이 아니므로 그것만을 가지고서는 사건전체에 대한 표상을 가질수 없고 사건을 증명하기가 어려울수 있지만 일부 부분들을 목격한 사람들을 찾아내고 그들의 증언내용을 하나로 련관시켜 종합분석하여본다면 사건을 얼마든지 증명해낼수가 있다.

그러므로 알고있는 사실의 정도의 차이에는 관계없이 알고있는 사실이 사건해결에 의의가 있는것이라면 그것을 알고있는 사람들은 증인으로 될수 있으며 또 응당 증인으로 되여야 한다.

공화국형사소송에서 증인으로 되는데서는 둘째로, 그가 어떤 경로를 통하여 그 사실을 알게 되였는가 하는것이 문제로 되지 않는다.

사람들은 사건해결에 의의를 가지는 사실을 직접 보고 듣거나 느낀것으로 알수도 있고 그것을 직접 보고 듣거나 느낀 사람으로부터 전해들어 알수도 있다. 이러한 경로상의 차이는 증인으로 되는데서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

물론 직접 해당 사실을 보거나 듣고 느낀 사람의 진술에 비하여 그 사실을 전해듣고 옮기는 사람의 진술이 구체적이지 못하고 여러모로 믿음성이 적은것만은 사실이다. 해당 사실을 직접 알게 된 사람으로부터는 그가 진술에서 빼놓고 말하지 않았거나 대수롭지 않게여기고 스쳐지나보내는 사실, 틀리게 진술한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명백히 할수 있다. 그러나 해당 사실을 전해듣고 옮기는 사람으로부터는 그가 들은 사실을 아무리 성실하게 그대로 진술한다고 하여도 그 사실을 전달한 사람이 이야기한 내용이상의것을 알아낼수 없다.

그렇다고 하여 직접 사실을 알게 된 사람의 진술에 비해 듣고 옮기는 사람의 진술이 믿음성이 적다고 하여 증거적가치를 전혀 가지지 못하는것은 아니다. 듣고 옮기는 사람의 진술도 그 원천이 명백하고 사건해결에 의의를 가지는 한에서는 증거적의의를 가진다. 다시말하여 그것은 파생적증거로서 의의를 가진다.

공화국형사소송법에서는 다음으로 사건취급처리에 도움을 주는 증인의 종류에 대하여 규정하였다.

형사사건취급처리에서 증인으로 나서는 사람들은 사건해결에 도움을 주는 사람들로서 그들이 법기관앞에서 증언하는 증언내용에 따라 여러가지로 분류하고있다.

공화국형사소송에서는 증인은 범죄자와 범죄사실에 대하여 보고 듣고 느낀것이 있으면 범죄자의 가족, 친척뿐아니라 미성인도 다 증인으로 선정하여 증언할수 있도록 하고 있다.

증인을 이렇게 규정해야 범죄자와 그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전면적으로 밝히고 범죄자가 감행한 범죄사실에 맞게 정확한 형사책임을 지울수 있다.

공화국형사소송법에서는 다음으로 증인으로 될수 없는 특수한 경우를 규제하는 방식으로 증인의 자격을 규정하였다.

증인으로 될수 없는 특수한 규정은 증인이 해당 사건의 취급처리에 관여하였거나 관여하고있는 사람들속에서 그들이 서로 다른 소송상임무를 담당할수 없도록 하는것이다.

공화국형사소송법에서는 증인으로서 배제되여야 할 사람들을 그들이 증인으로 나서면 사건을 과학적으로 공정하게 취급처리하는데 영향을 줄수 있는 사람들에 국한시키고있다.

증인으로 될수 없는 특수한 규정에 의하면 해당 사건의 증인으로 선정된 사람들은 한 사건취급처리에서 서로 다른 소송상임무를 겸임할수 없다는것이다.

소송상의 임무를 겸임할수 없다는것은 공화국형사소송의 일반원칙의 하나이다. 이 원칙은 증인으로 나설수 있는가 없는가 하는 문제를 결정하는데서도 그대로 적용된다.

소송상의 임무를 겸임하지 말데 대한 원칙은 사건취급처리에서 과학성과 객관성을 보장하자는데 목적을 두고있다. 만일 소송관계자들이 해당 형사사건의 취급처리에서 서로의 임무를 겸할수 있도록 허용한다면 선입견과 편견, 주관과 독단을 피할수 없게 된다. 그리고 그들이 진행한 해당 소송행위들의 정당성을 대중에게 납득시킬수도 없다.

증인의 경우에도 소송상임무를 겸임할수 있도록 허용한다면 이러한 후과를 초래할수 있다. 실례로 한사람이 증인이면서 해당 사건취급에서 수사원, 예심원과 같은 담당자로 되는 것을 허용한다면 그가 진행한 소송활동의 결과에 그의 주관이 작용하지 않는다고 말할수 없으며 또 그것이 작용하지 않았다고 대중에게 납득시킬수도 없는것이다.

이로부터 공화국형사소송법에서는 증인이 손해보상청구자로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절대로 소송상임무를 겸하지 말것을 요구하고있다.

그러므로 사건과 관련한 사실을 보고 듣고 느낀것이 있어 사건해명에 증인으로 나서려고 하는 사람은 사건취급처리에서 다른 소송상임무를 겸임하지 말아야 한다. 다시말하여 증인으로 나서야 할 경우에는 비록 그가 수사원, 예심원, 검사, 판사, 인민참심원의 직무를 가지고있다 하더라도 해당 사건의 취급처리에는 그러한 직무를 가지고 참가할것이 아니라 증인으로만 나서야 하며 해당 사건취급처리에서 변호인, 감정인, 통역인, 해석인, 립회인으로 나서지 말아야 한다.

이와 같이 공화국형사소송에서 증인으로는 해당 사건에 대하여 보고 듣고 느낀것이 있는자로서 사건취급처리에서 다른 소송상임무를 맡지 않은자(손해보상청구자인 경우는 제외)가 될수 있다.

공화국형사소송법에서는 증인으로 되는데서 이외에 그 어떠한 조건도 내세우지 않고있다. 이러한 증인자격제도가 마련됨으로써 공화국형사소송에서는 피소자와 가족 및 친척관 계에 있는 사람들을 비롯한 사건취급처리에 도움을 줄수 있는 사람들을 최대한 증인으로 선 정하여 그들의 진술을 증명수단으로 리용하게 되였을뿐아니라 모든 범죄와 범죄자들을 모 조리 적발하고 과학적으로 확증하여 처리할수 있게 되였으며 사건취급처리에서 온갖 비과 학적인 요소들을 철저히 극복할수 있게 되였다.

우리는 증인자격제도에 대한 과학적인 리해를 가지고 형사책임과 관련한 리론실천적 문제들을 정확히 해결함으로써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을 법적으로 철저히 담보하는데 적극 이바지하여야 한다.